

투자권유준칙

제정 2017. 03. 27.
개정 2021. 09. 23.
개정 2022. 05. 09.
개정 2022. 08. 01.
개정 2023. 04. 10.
개정 2023. 12. 22.
개정 2024. 03. 01.

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 시행령, 금소법 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이하 "관계 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투자자문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대출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에 따라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2)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3) "포트폴리오 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4)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 가. 금소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 나. 금소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제3조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임직원 등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3) 임직원 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4) 임직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편 투자자 구분 등

제4조 (방문 목적 확인)

- 1) 임직원 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임직원 등은 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3)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제3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6조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 1)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2)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참고1]의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가.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사용
 - 나. 유의사항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자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설명의무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설명의무가 적용됨. 따라서 이 경우 향후 판매 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 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3)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 4)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를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가.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이행 및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나.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계좌(자문결합계좌)를 통해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의사가 전달되는 경우

제7조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 1)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 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1)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별표 2]의 적합성 판단 기준에 따른다.
- 3) 임직원은 2)의 경우에,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편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4-1편 투자자 정보

제8조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 성향 분석 등)

- 1)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2) 임직원 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3) 임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따라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4)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3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 5)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별지 제7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이용하여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9조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1) 임직원 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2)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1)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이메일, 전화번호 등에 대한 최신정보도 포함)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3)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4) 1)부터 3)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하여야 한다.

제4-2편 투자 권유

제10조 (투자권유 절차)

- 1) 임직원 등은 회사가 정한 [별표 2호]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 3호]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 4)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된다.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가.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부적합 상품)을 투자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투자자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큰 손실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기 위하여 사용
 - 나. 유의사항 :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을 투자하는 등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5) 임직원등은 가.의 투자자에게 나.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가. 교부대상자 :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
 - 나. 대상상품 : ELS, ELF, ELT, DLS, DLF, DLT
- 6)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7조 제2항 또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

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 1) 임직원 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10조 1항에 따른 [별표 2호]의 적합성판단 기준과 [별지 제3호]의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임직원 등은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 1)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 가.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 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2) 이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3)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지 제5]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 1)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 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1), (2)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취득경로, 권유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내용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해당 금융소비자가 투자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1)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사모펀드,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2)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 장외파생상품
 - 라.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1)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2)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가)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나)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①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②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③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다) 신탁계약

- ① 법 제103조 제1항 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 ② 법 제10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3) (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른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가) 기초자산의 종류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나) 선도, 스왑,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 마.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사.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 아.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 자.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 차. 투자자의 사전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 카. 금소법 제17조를 적용 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 타. 관계법령 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의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2)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3)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 4) 임직원 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 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 가.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나. 계열회사 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제4-3편 설명의무

제14조 (설명 의무)

-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 2) 1)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는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가.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 나. 임직원 등: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 3)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 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 4) 임직원 등은 1)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5) 임직원 등은 1)부터 4)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임직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작성한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 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나.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다.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7)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가. 서면교부
 -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 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8) 임직원 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임직원 등은 위험등급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위험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10)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15조 (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 1)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 나.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세제 등 제도의 차이
 - 다.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 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2)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1) 따른 설명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 나.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 다.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라.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 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 3)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1)에 따른 설명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 나.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 다.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 라.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 마.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제16조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조건부자본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1)에 따른 설명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전액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
- 나. 상각·전환의 사유 및 효과
- 다. (이자지급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정한 사유 발생시 또는 발행인의 재량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 라. (만기가 장기이거나 발행인의 임의만기연장 특약이 있는 경우) 장기간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 마. (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만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
- 바. 사채의 순위

제5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17조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 1) 회사는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 및 [참고3]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 ① 기초자산의 변동성, ② 신용등급, ③ 상품구조의 복잡성, ④ 최대 원금손실 가능액, ⑤ 환매·매매의 용이성, ⑥ 환율의 변동성, ⑦ 그 밖에 원금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2) 위험등급은 최소 6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한다. 다만,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

등급 산정은 [참고3]에 따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 3)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4) 임직원 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측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제6편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8조 (계약서류의 교부)

- 1)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가. 서면교부
 -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 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2)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 3)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4)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제19조 (청약의 철회)

- 1)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회사와 투자자 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서면 등(전자우편, 휴대전화 메시지 등 금소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서면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 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가. (금소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나. (금소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 2)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투자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후 회사에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한다.
- 3)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4)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금전신탁계약에 대하여 청약 철회 기간을 계산할 때 숙려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 5)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 6)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20조 (위법계약의 해지)

- 1) 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제2항, 제19조(설명의무)제1항·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시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 가. 가.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 기간을 포함한다.)
 - 나. 나. 계약기간 종료 전 투자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 2) 투자자가 1)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지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3)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 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투자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 다.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라. 회사가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투자자에게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 (1)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 (2)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 마.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4) 회사는 2), 3)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21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103조 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나.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22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 가.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등
 - 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 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 라.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 마.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 바.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사.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 아.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자.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차.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 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 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 파.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 2)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1)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 가. 1)의 각 호의 사항
 - 나.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 다.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 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마.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23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호 및 나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가호 및 나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가.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나.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다.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24조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 1)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임직원 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소비자가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 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

- 2) 임직원 등은 1)의 가호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 1호]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 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3)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자산을 개별적으로 1:1로만 운영하는 경우(특정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 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지 않는 경우)는 자산배분유형군이나 세부자산배분유형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하게 운용해야 한다.
- 4) 회사는 1)의 가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5) 임직원 등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가.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 나.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 다. 가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일임·금전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 라.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제25조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특칙)

- 1) 투자자에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로보어드바이저의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전략 및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주요 특성 및 유의사항 등을 [별지 제6호]와 같이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3)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중대한 변경 등 주요사항 변경시에는 투자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26조 (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 1) 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은 금소법시행령 제26조 참조)를 10년(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 동안)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3)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 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준칙은 2017. 3. 27. 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준칙은 2021. 9. 23.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준칙은 2022. 5. 9.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준칙은 2022. 8. 1.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준칙은 2023. 4. 10.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준칙은 2023. 12. 22.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준칙은 2024. 3. 1.부터 시행한다.

투자자정보 확인서

1. 투자일임(자문)계약-개인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 규정] 제4-47조 및 제4-93조에 따라 고객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투자일임 또는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투자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투자자 <input type="checkbox"/> 전문투자자
--------	---

신규 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또는 정보변경) <input type="checkbox"/> 기존정보와 동일(유예기간 연장)
-------	---

● 투자자정보 항목

1.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만 19세 이하 ② 만 20세 ~ 34세 ③ 만 35세 ~ 49세 ④ 만 50세 ~ 64세 ⑤ 만 65세 이상
2. 연간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③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④ 5,0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⑤ 8,000만원 이상
3. 부채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③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④ 5,0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⑤ 8,000만원 이상
4. 총 자산 대비 금융자산(예적금, 주식, 펀드 등)의 비중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① 10% 이하 ② 10% 초과~40% 이하 ③ 40% 초과
5. 주식이나 펀드 등의 금융투자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없음 ② 1년 미만 ③ 2년 미만 ④ 3년 미만 ⑤ 3년 이상
6.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등)의 구조, 위험에 대한 이해도는?	① 거의 이해 못하고 있음 ② 일정 부분 이해 ③ 깊이 있게 이해 ④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대부분 이해
7. 투자수익, 위험에 대한 태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하거나, 원금 보전이 더 중요함 ② 기대수익과 위험을 균형 맞춰 투자수익을 추구함 ③ 기대수익을 높은 위험보다 우선하여 투자수익을 추구함 ④ 위험과 상관없이 높은 기대수익을 추구함
8. 단기적(1~2개월)으로 예상 손실한도를 넘어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 어	① 포트폴리오 모두 환매 ② 포트폴리오 일부 환매 ③ 그대로 유지 ④ 신규 투자자금으로 추가 매수

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9.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또는 처분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채무 상환 자금 ② 생활비, 학비 등 필수 자금 ③ 주택 전세 등 주거 자금 ④ 자동차, 여행 등 여유 자금 ⑤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자금
10. 예상 투자 기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① 1년 미만 ② 1년 ~ 2년 미만 ③ 2년 ~ 3년 미만 ④ 3년 ~ 5년 미만 ⑤ 5년 이상

● 투자자정보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귀사의 정기적 투자자정보 변경 여부 확인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니다.

고객명: (서명/인)

●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

귀사가 파악한 본인의 투자성향이 ()등급임을 고지 받았으며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 임에도 불구하고 귀사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본인의 판단에 따라)투자 하고자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고지 받았음)확인합니다.

해당상품명 및 위험등급 (투자일임계약) (등급)

고객명: (서명/인)

● 추심이체 출금동의 동의 확인

수수료 발생 시 납부의 편의를 위해 발생된 수수료가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통해 고객 계좌에서 업라이즈투자자문(주)의 계좌로 자동 납부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신청과 관련하여 귀사와 계약한 금융거래정보(거래증권회사명, 지점명, 계좌번호)를 출금 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귀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제정경제 명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고객명: (서명/인)

● 직원기재

취약투자자 해당여부 YES NO

- 65세 이상 투자자 또는 미성년자
- 정상적 판단에 장애가 있는 투자자
- 기타 취약투자자 해당하는 자(금융투자상품 무경험자 등)

투자자정보 확인서

2. 투자일임(자문)계약(법인)

-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 규정] 제4-47조 및 제4-93조에 따라 고객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투자일임 또는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투자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투자자 <input type="checkbox"/> 전문투자자
--------	---

신규 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또는 정보변경) <input type="checkbox"/> 기존정보와 동일(유예기간 연장)
-------	---

● 투자자정보 항목

1. 법인은 설립한지 얼마나 경과하였습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5년 미만 ③ 5년 이상~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2. 당기순이익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1억 미만 ②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③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④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⑤ 100억원 이상
3. 부채현황은?	① 1억 미만 ②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③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④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⑤ 100억원 이상
4. 총 자산 대비 금융자산(예적금, 주식, 펀드 등)의 비중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① 10% 이하 ② 10% 초과~40% 이하 ③ 40% 초과
5. 주식이나 펀드 등의 금융투자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없음 ② 1년 미만 ③ 2년 미만 ④ 3년 미만 ⑤ 30억 초과
6.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또는 처분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단기자금 운용 ② 장기자금운용 ③ 여유자금 운용 ④ 공격적인 자산 증식
7. 투자 예정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1년 이하 ② 1년 초과~2년 이하 ③ 2년 초과~3년 이하 ④ 3년 초과
8. 투자수익, 위험에 대한 태도를 가장 잘 설명한 것	①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하거나, 원금 보전이 더 중요함 ② 기대수익과 위험을 균형 맞춰 투자수익을 추구함

은?	③ 기대수익을 높은 위험보다 우선하여 투자수익을 추구함 ④ 위험과 상관없이 높은 기대수익을 추구함
9. 단기적(1~2개월)으로 예상 손실한도를 넘어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① 포트폴리오 모두 환매 ② 포트폴리오 일부 환매 ③ 그대로 유지 ④ 신규 투자자금으로 추가 매수
10.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등)의 구조, 위험에 대한 이해도는?	① 거의 이해 못하고 있음 ② 일정 부분 이해 ③ 깊이 있게 이해 ④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대부분 이해

● 투자자정보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귀사의 정기적 투자자정보 변경 여부 확인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니다.

법인명: (서명/인)

●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

귀사가 파악한 본인의 투자성향이 ()등급임을 고지 받았으며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 임에도 불구하고 귀사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본인의 판단에 따라)투자 하고자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고지 받았음을)확인합니다.

해당상품명 및 위험등급 (투자일임계약) (등급)

법인명: (서명/인)

● 추심이체 출금동의 동의 확인

수수료 발생시 납부의 편의를 위해 발생한 수수료가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통해 고객 계좌에서 업라이즈투자자문(주)의 계좌로 자동 납부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신청과 관련하여 귀사와 계약한 금융거래정보(거래증권회사명, 지점명, 계좌번호)를 출금 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귀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제정경제 명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법인명: (서명/인)

투자자정보 확인서

3. 비대면 투자일임(자문)계약

-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 규정] 제4-47조 및 제4-93조에 따라 고객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투자일임 또는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 투자자정보 항목

일반적인 투자성향	1.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19세 이하 ② 20세 ~ 40세 ③ 41세 ~ 50세 ④ 51세 ~ 65세 ⑤ 66세 이상
	2.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어요. ②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어요. ③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어요. ④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어요.
	3. 투자해 본 적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주식신용거래, 선물/옵션, ELW, 원금비보장형ELS/DLS ② 국내주식, 해외주식, 주식형펀드, 해외펀드, 자문/일임 ③ 채권/혼합형펀드, 신탁, 채권 ④ 투자경험이 없어요.
	4 자산 중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은 얼마인가요?	① 5% 이하 ② 5% 초과 ~ 10% 이하 ③ 10% 초과 ~ 20% 이하 ④ 20% 초과 ~ 30% 이하 ⑤ 30% 초과
	5. 월소득은 어느 정도이신가요?	① 100만원 이하 ② 100만원 초과 ~ 400만원 이하 ③ 4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④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⑤ 3,000만원 초과

	6. 원금보존과 투자수익 중 무엇이 더 중요하신가요?	① 투자수익을 고려하나 원금보존이 더 중요해요. ② 원금보존을 고려하나 투자수익이 더 중요해요. ③ 손실위험이 있더라도 투자수익이 중요해요.
	7. 투자시 발생하는 손실은 얼마나 견딜 수 있으세요?	① 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 견딜 수 있어요. ② 원금 중 일부의 손실은 괜찮아요. ③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없어요.
현재 투자자금 성향	8 투자 목적을 알려주세요.	① 안정적인 노후자금 ② 아늑한 내 집 마련 ③ 우리 아이 교육 ④ 여유자금 투자 ⑤ 나에게 주는 선물 ⑥ 다가올 해외여행 ⑦ 기타 다른 목적
	9. 예상 투자기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③ 3년 이상 ~ 5년 미만 ④ 5년 이상

● 투자자정보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귀사의 정기적 투자자정보 변경 여부 확인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니다.

고객명: (서명/인)

●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

귀사가 파악한 본인의 투자성향이 ()등급임을 고지 받았으며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 임에도 불구하고 귀사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본인의 판단에 따라)투자 하고자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고지 받았음을)확인합니다.

해당상품명 및 위험등급 (투자일임계약) (등급)

고객명: (서명/인)

● 추심이체 출금동의 동의 확인

수수료 발생시 납부의 편의를 위해 발생한 수수료가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통해 고객 계좌에서 업라이즈투자자문(주)의 계좌로 자동 납부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신청과 관련하여 귀사와 계약한 금융거래정보(거래증권회사명, 지점명, 계좌번호)를 출금 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귀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제정경제 명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고객명: (서명/인)

● 직원기재

취약투자자 해당여부 YES NO

- 65세 이상 투자자 또는 미성년자
- 정상적 판단에 장애가 있는 투자자
- 기타 취약투자자 해당하는 자(금융투자상품 무경험자 등)

[별지 제 2 호]

투자성향 부적합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서

- 동 확인서는 투자자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투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투자성 상품 가입시 금융회사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3.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4.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5.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적정성 원칙* 대상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면담·질문 등을 통해 해당상품이 귀하에게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결과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적정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

투자자 확인사항

※ 괄호안 부분은 자필기재

적합(적정)성 판단 결과	투자자 성향	()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

※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투자성 상품

투자자 성향	공격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투자성 상품의 위험 등급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무위험

년 월 일

고객 성명 _____(인/서명)

고령투자자 보호기준

1. 고령투자자 보호 필요성

- 고령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쇠약과 더불어 기억력과 이해력이 저하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또한, 대부분의 고령투자자들이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잔여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 아울러, 최근 금융투자상품이 구조화·첨단화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2. 고령투자자 정의

- 연령 기준 : 65세 이상, 초고령투자자 : 80세 이상
- 계좌 명의인이 아닌 그 대리인이 고령투자자 연령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고령투자자 보호에 관한 기준

- 회사는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사 내 고령투자자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을 지정합니다.
- 회사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지정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강화된 투자권유절차를 적용합니다.
- 회사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신상품 개발시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설명서,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합니다.

4. 투자권유시 고령투자자 보호 방안

- 회사는 임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준법감시담당자가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고령투자자에게 투자자문계약·일임계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유의사항을 고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의 고령투자자인 고객님의께서는 투자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일임재산은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되므로 투자결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고객님의 귀속됩니다.

•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투자일임재산의 투자대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 **시장상황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평균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제시되는 투자조언으로서 금융시장의 모든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테스트베드는 알고리즘의 수익성 및 품질을 검증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테스트베드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알고리즘의 합리성, 법규 준수성,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알고리즘의 수익성 및 품질을 검증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ETF는 조기상환 및 평가손실의 확정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F는 발행회사나 해당 상품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조건의 변경(조기상환) 및 평가손실의 확정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해외투자의 경우 환율 변동에 의해 투자가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은 외화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해당 통화의 환율 변동에 의해 투자 자산의 가치가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여유자금으로 자기책임하에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고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 책임하에 신중히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 회사는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5. 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 회사는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령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회사는 향후 분쟁 등에 대비 고령투자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녹음·녹화하거나 준법감시담당자가 기록·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초고령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투자권유 자제를
-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설명서 또는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된 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고, 임직원의 투자권유가 없는데도 고객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는 등 판매 자

제

- 회사는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 등에게 투자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등을 대신하여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할 수 있고, 초고령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 등을 확인
- 초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피콜 등을 통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투자권유 및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고객보관용)

투자위험등급: 급
()

업라이즈투자자문 주식회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6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권유 및 투자설명서 교부대상 금융투자상품:
- 투자권유 및 투자설명서 교부일: _____년 ____월 ____일
- 담당직원: 직위_____ 성명_____ (인 또는 서명)

[핵심사항]

- 이 투자일임계약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투자일임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투자일임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투자 위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위험 체크)

- 신용위험: 증권 발행회사의 부도 등 위험에 따른 손실위험
- 시장위험: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위험
- 환위험: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위험
- 기타위험: ()

※ 이 금융투자상품(계약)의 다른 투자위험과 손익구조 등에 대해서는 설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권유 및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회사보관용)

- 투자권유 및 투자설명서 교부대상 금융투자상품:
- 상대적 위험도: 총()단계 중()번째로 높음
- 투자권유 및 투자설명서 교부일자: _____년 _____월 _____일
- 투자권유 및 투자설명서 교부직원: 직위_____성명_____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1. (투자권유)를 대면하여 (받았음, 받지 않음)
2. (투자설명서)를 (받았음, 받지 않음, 교부를 거부하였음)
3.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 가능함을 알고 있음,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 들었음)
4. 예금자보호대상 아님(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됨)
5. (상대적 위험도)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 듣지 못했음)
6. (주요위험) 및 (손익구조)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

년 월 일

고객 _____(인 또는 서명)

적합성 판단 방식 (장외파생상품)

1. 만 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 가. 금리스왑
 - 나. 옵션매수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미만인 주권 비상장법인 및 개인사업자,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주권상장법인과 만 65세 미만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위험관리능력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자(일반투자자인 개인은 제외)에 대하여는 가 목부터 다 목 이외의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도 투자권유할 수 있다.
 - 가. 금리, 통화 스왑
 - 나. 옵션 매수, 매도
 - 다. 선도거래

구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개인	만 65세 이상	금리스왑 옵션매수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만 65세 미만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법인 및 개인사업자	주권 비상장법인, 개인사업자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주권 상장법인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하며, 각 위험도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예시는 "16.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의 회사참고사항을 참조할 것

* '경고' 위험도에 적합한 투자자 중 위험관리능력,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상품에 대한 지식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는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 유의사항

1. 로보어드바이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입니다.

2. 로보어드바이저는 **평균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제시되는 투자조언으로서 금융시장의 **모든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실현된 기존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 성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이 이루어지므로** 효율적인 투자자문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정확한 답변이 중요하며,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은 잘못된 운용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알고리즘의 특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4. 테스트베드*는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합리성, 법규 준수성,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알고리즘의 수익성 및 품질을 검증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테스트베드는 분산투자, 투자자성향 분석, 해킹방지체계 등 투자자문·일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이에 따라,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가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지 않은 로보어드바이저에 비해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일임과정에 사람의 개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상황의 급변 등 필요시에는 투자운용인력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관련 법률에 따라 회사가 일반투자자인 투자자에게 장외 파생상품거래를 권유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의 기명날인(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 ▶ 파악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적절한 파생상품을 권유하는 데 활용합니다.
- ▶ 또한 일반투자자가 회사의 권유 없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거래)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최대한 투자자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께서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회사는 투자자와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거절하거나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께서 부담하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유형	상장기업 <input type="checkbox"/>	비상장기업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 <input type="checkbox"/>
--------------	-------------------------------	--------------------------------	--------------------------------

I. 투자자의 재무현황

1. 재무현황

자산 총계 :	외화자산 총계 :
부채 총계 :	외화부채 총계 :
연간 수출총액 :	연간 수입총액 :
금융투자자산 보유금액 :	

2.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의 종류 및 약정잔액[모든 금융기관 포함]

II. 거래의 목적

거래목적	예	아니오
투자자께서는 위험회피(헤지) 목적으로 아래 거래를 체결하고자 합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II.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1. 거래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이자율	상품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위험회피(헤지)하고자 하는 해당 기초자산의 보유 내역 및 금액, 보유 경위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상품에 대한 이해 수준

1. 장외파생상품 최고 의사결정자*			
소속부서 :	직 급 :	성 명 :	
관련경력 :	관련 자격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 (전문가 수준) :	중 :	하 :
2. 장외파생상품 거래체결 담당자*			
소속부서 :	직 급 :	성 명 :	
관련경력 :	관련 자격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 (전문가 수준) :	중 :	하 :
3. 투자자의 대표자 및 위에서 언급한 임(직)원 들이 모두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조건과 그에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4. 투자자께서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이 투자자께서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의 속성 및 규모에 비추어 적합합니까?			
예 :		아니오 :	

※ 투자자가 법인 등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이외의 임직원이 회사와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로서 별도 양식으로 그 임직원의 인적 사항과 거래 인감(서명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V. 위험관리능력

위험관리능력	예	아니오	비 고
1. 장외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여부			조직명: 인원수:
2.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규정, 내부통제절차 및 업무절차 보유 여부			규정명:
3.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 보유 여부			전산시스템명 :

VI. 금융거래수준

투자자께서 지금까지 거래한 경험이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 규모 등에 대하여 다음의 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종류	경험유무	건 수	거래연수	거래규모*
-------	------	-----	------	-------

선물환(FX Forward)				
FX 스왑(FX Swap)/통화스왑(Currency Swap)				
구조화 통화 옵션(Exotic FX Option): KIKO 등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				
신용디폴트스왑(Credit Default Swap)				
상품 파생(Commodity Derivatives)				
기타 유형 :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규모는 원화 또는 달러화로 표시합니다.

투자자 확인

▶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직 위) (담당자) (서명/인)
업라이즈투자자문 주식회사

업라이즈투자자문 주식회사 확인

▶ 이 확인서 내용은 업라이즈투자자문 주식회사가 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기에 앞서 그 거래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악한 정보입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직 위) (담당자) (서명/인)
업라이즈투자자문 주식회사

<참고사항>

- ※ 예시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는 투자권유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기 위해 투자자가 작성하는 양식이며, 만약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참고1]의 투자자 확인(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고객이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본 확인서 사본에 회사가 기명날인한 후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본 조사표 원본은 회사가 보관합니다.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투자 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투자자 확인사항

상기 기재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권유 여부를 결정하신 경우 아래 각 항목의 해당사항에 체크한 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권유 희망 여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2.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투자자정보를 제공함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일임·(비지정형)신탁계약 및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 거래 희망 시에는 체크불가

-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I. 목적

- 동 기준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과 관련하여 위험등급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관계법규] 금소법 §19, 시행령 §13② 및 §13③, 감독규정 §12

II.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

1. 적용대상 금융상품

-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투자성 상품으로 지분증권,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신탁계약, 일임계약 등을 포함하되, 「금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상품*을 제외한다.

* 연계투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 [관계법규] 금소법 시행령 §13②

2. 위험등급 산정의 주체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이하 '판매회사')는 「1. 적용대상 금융상품」에 포함되는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전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관계법규] 금소법 §19①제1호나목3

-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과 금융상품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이 다를 경우, 판매회사는 제조회사와 위험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한다.

☞ [관계법규] 금소법 감독규정 §12②제3호

- 판매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시 당해 금융상품의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위험등급을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단,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확인하며, 그 절차와 방식 등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른다.

* (예) 신상품은 상품출시 관련 의사결정 단계에서 위험등급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존 상품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에 따라 선정한 표본 상품을 대상으로 등급산정 방법론 및 적정성을 검증하며, 이를 위한 내부 기준을 수립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 마련

※ 회사참고사항 Ⅱ. 2-1

- ▶ (적정성 검증 자료의 수취) 판매회사가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제조회사가 위험등급 산정시 사용한 기초자료, 판단 근거 등을 제조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 ▶ (적정성 검증의 범위) 판매회사는 제조회사가 사용한 기초자료로부터 동 가이드라인이 정한 기준이 정하는 바대로 위험등급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 ▶ (기존 상품에 대한 적정성 검증 방법) 판매회사는 기존상품의 적정성 검증 시기, 표본 선정 방법, 검증 결과 처리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기존상품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내부 기준 예시>

가. (적정성 검증 주기) : 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말까지 검증
 나. (적정성 검증 대상 상품군) : 해당 분기에 결산이 도래한 개방형&추가형 펀드
 ※ 단 현재 판매를 중단하거나, 신규 판매를 중단하고 자동이체 형식으로 정액정립식 추가납입만 받고 있는 펀드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가능
 다. (적정성 검증 대상 상품군 표본 선정)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회사의 관련 전문 조직에서 판매금액, 위험도 변경 여부, 고객군, 고위험 상품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선정. 다만 아래의 기준을 참고 가능
 √ (판매금액) 검증 대상 상품군 중 연간 판매액이 높은 상위 ★%(단, 최소 20개 이상) 펀드
 √ (위험도 변경) 해당 분기에 결산 후 위험도가 변경된 펀드
 √ (고위험 상품) 자본시장법상 고난도 펀드
 √ (보호필요대상 투자자) 초고령층·부적합 투자자에 대한 연간 판매액 최상위 펀드, 추천펀드 등
 ※ 상기 기준 외에도 랜덤하게 일부 상품을 추출하여 검증할 것을 권장
 ※ 이밖에 급작스러운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위험도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예: 주된 투자대상 자산에 30% 이상 부실(금융투자업규정 별표 제18호에 따른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부실)이 발생 하는 등)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재검증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품 제조업자는 검증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판매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협조함이 바람직함

3. 위험등급 체계

□ 위험등급은 최소 6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하며 그 수가 커질수록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등급 구간별 명칭(예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4. 위험등급 산정방식

□ 판매회사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 각 위험요소별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것은 'Ⅲ.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① 기초자산의 변동성, ② 신용등급, ③ 상품구조의 복잡성, ④ 최대 원금손실 가능액, ⑤ 환매·매매의 용이성, ⑥ 환율의 변동성, ⑦ 그 밖에 원금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관계법규] 금소법 §19①제1호나목3, 시행령(§13③) 및 감독규정(§12)

① 시장위험* 등급은 투자성 상품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Ⅲ.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6단계(또는 그 이상)로 산정한다.

* 기초자산의 변동성 등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원금손실 위험을 통칭
 ② 신용위험* 등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 또는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한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발행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칭

- 국내신용등급과 해외신용등급이 상이한 경우, 국내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 신용등급만 있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5] 35호 라목에 따라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할 수 있다.

<표1>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위험등급 분류

구분	6등급(저위험)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고위험)
장기등급	국공채 등 ^{주1)} , AAA~AA-		A+ ~ A-	BBB+~BBB-	BB+~BB-	B+ 이하 또는 무등급
단기등급	A1		A2	A3	B 이하 또는 무등급	

1) 자본시장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등으로 사채권에 비해 신용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채무증권

2) 신용평가회사에 따라 등급 표시방법이 상이한 경우 상기 등급체계를 준용

③ 시장위험 등급과 신용위험 등급을 모두 산정하는 상품의 경우 「Ⅲ.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모두 고려한 종합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④외국통화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종합 위험등급을 1등급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외화표시 파생결합증권,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 해외채권 등

- 다만, 해당 외국통화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상향할 수 있고,

- 환율위험에 대한 헤지가 이루어져 환율의 변동성이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환율위험이 위험등급에 이미 반영된 경우 등 등급 상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유동성위험은 해당 상품의 중도환매 가능 여부 및 중도환매시 비용의 정도에 따라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3단계로 구분하고,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로 기재한다.

* 중도환매 시 발생하는 비용의 수준 등 환매의 용이성을 제한하는 요소 세부내역

- 또한 상품 구조상 중도 환매·매매 등에 제약이 없더라도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밖에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환매·매매의 용이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유동성위험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 기재한다.

- 판매회사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유동성위험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에 직접 반영(등급 상향)할 수 있다.

⑥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상기 위험등급 산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2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 위험등급이 2~6등급인 경우 2등급을 부여하고 최종 위험등급이 1등급인 경우 그대로 1등급 부여

⑦ 판매회사는 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원금손실 등 상품의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위험등급 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또한 「Ⅲ.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위험등급이 실제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을 상향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5. 위험등급 산정 시기

□ 위험등급은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1회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 판매 및 환매가 가능한 상품(예: 개방형 펀드)의 경우 연 1회(매년 결산시점) 등급을 재산정한다.

◦ 다만,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시장상황 급변 등으로 특정 위험요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기타 현재 사용중인 위험등급이 시장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회사의 판단에 따라 위험등급을 재산정할 수 있다.

6. 위험등급 관련 내부통제

□ 판매회사는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상품 출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의 적정성 평가·검토 절차를 반영하고 이미 판매중인 상품의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7. 위험등급의 표시·설명 방법

□ 판매회사는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유동성에 관한 별도 등급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명함에 있어서 각 위험등급별로 다른 색상으로 나타내는 등 고객이 각 등급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시한다.

◦ 또한 위험등급 산정에 반영한 중요 위험요소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충실히 기재·설명한다.

□ 판매회사는 위험등급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위험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관계법규]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 제2호

III.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

1. 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은 투자원금을 초과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1등급(가장 위험도가 높은 등급)을 부여한다.

※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는 헤지 목적 거래만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예시 > 장외파생상품 위험도 분류

- 가. 주의 : 금리스왑, 옵션매수 (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 나. 경고 :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 다. 위험 : 가, 나를 제외한 그 밖의 장외파생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

2. 집합투자증권

(1) 공모펀드

□ 설정 3년 미만 펀드의 경우 <표2>에 따라 편입대상 자산의 상품군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분류한다.

등급	국내투자 신규펀드 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①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위험)	①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①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①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위험)	①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표 2> 설정 3년 미만 펀드의 상품군별 위험등급 분류

- 1.“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2.“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3.“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4. 상기 표에 정의된 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설정 3년 경과 펀드는 출시이후부터 등급산정 기준일까지의 최근 3년간 일간수익률을 토대로 <표3>에 따른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표 3>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

	1등급 (고위험)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저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VaR로 산출한 위험등급에서 1등급 상향한다.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과거 수익률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 다만,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펀드는 수익률 변동성에 신용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입자산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 (예) 장외채권이거나 매매시장에서의 유동성이 낮아 시가변동이 미미한 경우

□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II.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사모펀드

□ 사모펀드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모펀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위험을 산출한다.

□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별도의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상품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다만, 별도 등급산정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가능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등급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 이 경우 별도로 산정된 위험등급은 2등급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파생결합증권

□ (종합등급) 시장위험등급과 신용위험등급을 각각 산정한 후 <표4>에 따라 종합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표4> 시장위험등급(MR)과 신용위험등급(CR)을 통한 종합 등급산출

구 분*	MR1 (고위험)	MR2	MR3	MR4	MR5	MR6 (저위험)
CR1(고위험)	1	1	1	1	1	1
CR2	1	2	2	2	2	2
CR3	1	2	3	3	3	3
CR4	1	2	3	4	4	4
CR5	1	2	3	4	5	5
CR6(저위험)	1	2	3	4	5	6

※ 주: MR은 시장리스크(Market Risk) 등급, CR은 신용리스크(Credit Risk) 등급

□ (시장위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 개수, 원금손실조건(낙인배리어 수준 등),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회사별로 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파생결합증권 평가 세부기준(예시)

□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를 초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등급을 부여하고,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3~5등급*을 부여

* 원금 부분보장비율 수준에 따라 등급 세분화(95% 이상 5등급, 90% 이상 95% 미만 4등급, 80% 이상 90% 미만 3등급)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1개 등급 상향

◦(기초자산의 개수) 기초자산의 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종류) 특수한 형태의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상품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능성이 낮은 경우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 과거 10년간 기초자산의 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일정 수준(예: 25%)을 초과하는 경우

◦(원금손실조건)낙인배리어(Knock-In Barrier)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예: 60% 이상) 또는 낙인배리어가 없는 노낙인형 상품의 만기배리어 요건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예: 70%)

◦(레버리지 여부) 손실발생구간의 손실배수가 기초자산 변동률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

※ 그밖의 판매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추가로 설정하거나 조정 가능

□ 상장지수증권(ETN)은 1~2등급 내에서 상품의 구조, 기초자산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분류하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등급을 부여한다.

* 기초자산의 1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 음의 배율로 연동, 해외지수·상품 또는 기타 특수한 형태의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경우

◦ 다만, 기초자산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펀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개별적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 (신용위험) 발행사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분류하되, <표1>의 기준을 준용한다.

□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표.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주식워런트증권(ELW)은 1등급(가장 위험도가 높은 등급)으로 분류한다.

4. 지분증권(주식 등)

□ 지분증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2등급을 부여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한 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비상장 주식은 1등급 상향한다.

◦해외거래소 상장종목은 1등급 상향한다.

◦한국거래소의 투자주의·경고·관리종목은 1등급 상향한다.

5. 채무증권

□ 발행사의 신용등급, 보증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부여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회사채*는 <표1>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분류하되, 외부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보증기관의 신용등급을 감안한다.

* 「자본시장법」 제4조③ 및 ⑦ 제1호에 해당하는 사채권(파생결합사채) 포함

◦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II.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되,

- 해외채권의 경우 해당국 통화의 종류에 따라 환율위험을 적극적으로 고려(위험등급을 0~2등급* 상향)하고,

* 예) 변동성이 큰 신흥국 통화로 투자되는 경우와 같이 환율위험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개 등급 상향 가능

- 당해 채권이 유통되는 해외 시장의 특징 및 환매 또는 매매가 제한될 가능성 등 유동성위험에 관하여 보다 상세히 기재한다.

◦ 조건부자본증권은 상각, 전환 위험 등을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특정금전신탁

□ 특정금전신탁은 편입 대상 자산의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을 정하되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 단일 상품이 편입된 신탁계약(예: ELT)의 경우 편입 자산의 위험등급을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한다.

◦ 신탁계약에 복수의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편입된 자산별로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개별 편입자산의 위험등급을 설명한다.

◦ 비지정형 신탁의 경우 신탁계약상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해당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위험등급 산정시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 헤지 목적 파생상품의 범위는 금융투자업규정 제1-2조의4 ④ 후단(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판단시 제외하는 파생상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준용

7. 투자일임계약

□ 투자일임계약상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해당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사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제시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총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품의 경우, 포트폴리오내 개별 상품의 위험등급을 각 상품별 편입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전체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6.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일임계약의 위험등급 산정시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8. 변액보험

□ 투자성 상품에 해당하는 변액보험*에 한하여 변액보험 내 펀드별로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 만기에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변액보험

◦ 펀드의 위험등급은 집합투자증권의 위험등급 산정 방법을 준용한다.

9. 기타

□ 판매회사는 특정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법규

및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일반원칙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별표 1] 투자자성향

투자성향	정의
공격형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적극투자형	투자원금의 보존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위험중립형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안정추구형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하고 자산 중 일부를 위험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안정형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별표 2] 적합성 판단 기준

투자자 성향	공격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투자위험 분류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별표 3]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

1.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표

구분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2 등급 (높은 위험)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4 등급 (보통위험)	5 등급 (낮은 위험)	6 등급 (매우 낮은 위험)
ETF	국내	운용사 표기 등급을 준용					
	해외	ETF내에 편입되는 자산의 위험도를 가중평균하고 환위험 노출을 고려하여 일괄 1등급 상향 적용					
채권	국내	미평가 채권, 회사채(B이하)	회사채(BB)	회사채 (BBB--~BBB+)	금융채, 회사채 (A)	금융채, 회사채 (AAA~AA)	국공채, 통안채, 지방채, 특수채
	해외	미평가 채권, B이하	BB(Ba)	BBB(Baa)	A	AA(Aa)	AAA(Aaa)
주식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투자주의·경고·관리종목, 비상장주식		주식				
현금성자산							현금, 현금성자산
장내파생 상품	선물 옵션	국내/해외 선물 옵션					

투자일임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해당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간주 • 사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제시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총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품의 경우, 포트폴리오내 개별상품의 위험등급을 각 상품별 편입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전체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가능
---------------	--

2.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위험등급		의미 및 유의사항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수용할 수 있는 공격형 투자성향의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2등급	높은 위험	투자수익을 위해 상당 부분을 위험 자산에 투자합니다. 위험을 감내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적극투자형 투자성향 이상의 고객님께 적합합니다.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실현을 추구하는 위험중립형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4등급	보통 위험	투자원금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자/배당소득 중심의 안정적 투자를 목표로합니다. 손실 위험 제한을 목표로 하지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안정추구형 투자성향 이상의 고객님께 적합합니다.
5등급	낮은 위험	예금 또는 적금 수준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도 투자원금의 보존을 추구하는 안정형 투자성향 이상의 고객님께 적합합니다.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안정형 투자성향을 가진 고객님께 적합한 상품입니다.